

##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03.01    개정: 2017.07.01  
개정: 2005.03.01    개정: 2019.07.10  
개정: 2008.12.17    개정: 2021.03.01  
개정: 2011.11.22    개정: 2021.12.01  
개정: 2013.03.01    개정: 2023.10.16  
개정: 2014.02.01    개정: 2024.03.01  
개정: 2014.07.01  
개정: 2016.03.0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구성원의 양성평등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0.>

### 제2장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예방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의 교직원(비정규직 포함) 및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8.12.17., 2011.11.22., 2019.07.0.>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신설 2019.07.10.>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7.10.>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07.10., 2021.12.01.>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07.10., 2021.12.01.>

3. <삭제 2019.07.10.>

4. <삭제 2019.07.10.>

5. “2차 피해”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03.01.> <개정 2021.12.01.>

② <삭제 2019.07.10.>

제4조(총장의 책무)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 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2014.02.01., 2016.03.01., 2017.07.01., 2019.07.10., 2021.12.01.>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신설 2019.07.10.>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신설 2019.07.10.>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신설 2019.07.10.>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신설 2019.07.10.>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설명 <신설 2019.07.10.>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신설 2019.07.10.>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신설 2019.07.10.>

8.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신설 2019.07.10.>

② <삭제 2019.07.10.>

③ <삭제 2019.07.10.>

④ <삭제 2019.07.10.>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권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07.10.> <개정 2021.12.01., 2023.10.16.>

② 본 대학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0.>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7.10.>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0.>

<전문개정 2019.07.10.>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총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0., 2021.12.01.>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1., 2014.07.01., 2017.07.01., 2019.07.10.>

<전문개정 2019.07.10.>

제7조(예방교육) ① 인권센터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7. 10.> <개정 2021.12.01., 2023.10.16.>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0.>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 교육이며 교직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학생의 경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0.>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권센터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인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07.10.><개정 2023.10.16.>

<전문개정 2019.07.10.>

### 제3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제8조(고충상담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7.10., 2021.12.01.>

1. <삭제 2019.07.10.>

2. <삭제 2019.07.10.>

3. <삭제 2019.07.10.>

4. <삭제 2019.07.10.>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0.>

<전문개정 2019.07.10.>

-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 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0., 2021.12. 01.>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7.10., 2021.03.01.>
-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0.>
-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19. 07. 10.>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9.07.10.>
-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07.10.>
- <전문개정 2019.07.10.>

-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총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19.07.10., 2021.12.01.>
- ②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 상담,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7.10., 2021.03.01.>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신설 2021.03.01.>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신설 2021.03.01.>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신설 2021.03.01.>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신설 2021.03.01.>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신설 2021.03.01.>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신설 2021.03.01.>
  7.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신설 2021.03.01.>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0.>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7.10>

<전문개정 2019.07.10.>

제11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0., 2021.03.01., 2021.12.01.>

② <삭제 2021.03.01.>

③ <삭제 2019.07.10.>

<전문개정 2019.07.10.>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07.10., 2021.12.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7.10.>

③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9.07.10.>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7.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03.01.>

<전문개정 2019.07.10.>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07.10., 2021.12.01.>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07.10., 2021.03.01.>

1. <삭제 2019. 07. 10.>

2. <삭제 2019. 07. 10.>

3. <삭제 2019. 07. 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9.07.10.>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신설 2021.03.01.>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01.>
-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07.10.>
-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0., 2021.03.01.>
- <전문개정 2019.07.10.>

제14조(사건의 종결)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개정 2019.07.10., 2021.03.01., 2021.12.01.>

1. 제11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19.07.10.>

제15조(징계) ① 총장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0.> <개정 2021.12.01.>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07.10.>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신설 2019.07.10.>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7.10.>

<전문개정 2019.07.10.>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7.10.>

## 제4장 보 칙

제17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7.10.>

제18조 <삭제 2019.07.10.>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